



제2203호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5 2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915-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2
○ 공 고 제 1 5 5 호	공인 신조 공고	민 원 여 권 과	5
○ 의회사무국 제 1 호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
○ 의회사무국 제 2 호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5
○ 의회사무국 제 3 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4
○ 의회사무국 제 4 호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5
○ 의회사무국 제 5 호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4
○ 의회사무국 제 6 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8
○ 의회사무국 제 7 호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6
○ 의회사무국 제 8 호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7
○ 의회사무국 제 9 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7
○ 의회사무국 제 1 0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99
○ 의회사무국 제 1 1 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08
○ 의회사무국 제 1 2 호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17
○ 의회사무국 제 1 3 호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28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5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915-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915-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453-2682),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간석동 16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만수동 915-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

3. 사업규모

- 만수동 915-2번지 일원: A=1,380.8㎡(주차대수: 49면)
- 간석동 165-6번지 일원: A=342.8㎡(주차대수: 12면)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교통행정과 032-453-2682, 도시재생과 032-453-2955)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동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1	만수동	915-10	대	459.9	459.9	문*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2	만수동	915-8	대	460.2	460.2	문*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 ***-**			
3	만수동	915-2	대	460.7	460.7	문*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4	간석동	165-6	대	171.2	171.2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간석동	165-7	대	171.6	171.6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소 계				1,723.6	1,723.6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55호

공인 신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2.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 사유 : 신규 자동인증기 구입에 따른 신조
- 공인 최초 사용일 : 2026. 01. 22.
- 신조 공인 수 : 신조 공인 1개
- 신조 공인 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규격(cm)
1	신조 공인	장수서창동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동 민원전용)		2.4cm x 2.4cm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1호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구민이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보호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 및 추진사업 (안 제4조, 제5조)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최 (안 제6조)
-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안 제7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표창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8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이유경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구민이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보호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 및 추진사업 (안 제4조, 제5조)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최 (안 제6조)
-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안 제7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표창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여부 미확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호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리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9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리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
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유지·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품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품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제품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위탁 및 지원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품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업체·전문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는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미첨부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조 원 구

[참고자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3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0
----------	------

발의연월일: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전용호·이유경 의원

찬 성 자: 유광희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본 문: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제35조 및 제3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4조(사업추진 등)” , “제5조(재정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게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4호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 밤샘주차 시설·장소 (안 제4조)
- 지정의 취소 및 준용 (안 제5조,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1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 밤샘주차 시설·장소 (안 제4조)
- 지정의 취소 및 준용 (안 제5조,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해당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는 조례
- 지정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김 문 자

[참고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32호.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5호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적용범위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교육추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2
----------	------

발의연월일: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전용호·이유경 의원

찬 성 자: 유광희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적용범위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교육추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본 문: “별첨”

☐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제13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방식이면서 앞·뒤 브레이크가 하나라도 없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국 도로과장 최윤희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

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8. 3. 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6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취약지역 대상 범죄예방 지원·관리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안 제7조제1항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3
----------	------

발의연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서점원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취약지역 대상 범죄예방 지원·관리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안 제7조제1항4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건축법」 제53조의2, 「지방자치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관내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우범·취약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우범지역 및 취약지역</u>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u>관내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우범·취약지역</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제7조(적용범위)제1항제4호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 의안과 해당 조례 제7조제1항 사항은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참고자료]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3~7호.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7호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시책에 따라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대상 (안 제1조, 안 제2조)
- 금융기관의 설정 (안 제3조)
- 융자추천 신청 및 한도액 (안 제4조, 안 제5조)
- 대상자 확정 및 이자보전 (안 제6조, 안 제7조)
- 보조기간 및 지급방법 (안 제8조, 안 제9조)
-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10조)
- 준용규정 (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4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시책에 따라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대상 (안 제1조, 안 제2조)
- 금융기관의 설정 (안 제3조)
- 융자추천 신청 및 한도액 (안 제4조, 안 제5조)
- 대상자 확정 및 이자보전 (안 제6조, 안 제7조)
- 보조기간 및 지급방법 (안 제8조, 안 제9조)
-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10조)
- 준용규정 (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범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범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구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자의 추천신청은 세대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용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용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용자알선 대상자 확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용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세대별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세대원 소득 포함)
5. 세대원구성(노동능력자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용자할 금융기관과 용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용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용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용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보조금) ① 보조금은 영세노점상 자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체적인 보조기준·보조율 및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월별로 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융자금금융기관과 협의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 자 추 천 신 청 서 (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노점상장소 (철거시)			
	노점상 구분	포장마차 손수레 보따리상 기타()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계 획	사 업 명			
	사업계획및 소요사업비			
	융자희망액			
	사 업 효 과			

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생계자금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7조
(이자보조금)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 (생략)

3 ~ 7호.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8호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치매환자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치매환자 지원 대상 및 추진사업 (안 제5조, 제6조)
- 예산 등의 지원 (안 제7조)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표창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5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이유경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치매환자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치매환자 지원 대상 및 추진사업 (안 제5조, 제6조)
- 예산 등의 지원 (안 제7조)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표창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치매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2조의2, 제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환자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관리 시행계획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치매환자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치매환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지원 사업
2.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
3. 실종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비용 발생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지원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참고자료]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 6.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9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
- 이동노동자 사업 지원 적용대상 정비 (안 제3조)
-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등 사업 범위 확대 정비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3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
- 이동노동자 사업 지원 적용대상 정비 (안 제3조)
-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등 사업 범위 확대 정비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7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권익 보호”를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개선, 복지증진”을 “개선”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 중 “권익보호를”을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로,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추진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안전 보호와 복리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성”을 “조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교육
5.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그 구입비 지원
6.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7. 이동노동자 문화·체육·안전 등 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u>권익 보호</u>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u>개선, 복지증진</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u>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4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u>권익보호를</u>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u>추진하여</u> 이동노동자의 <u>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u>	<u>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 --- <u>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u> --- -- <u>규정하여</u> ----- ----- <u>개선</u> ----- -----. 제3조(적용대상) <u>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u> 1. <u>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u> 2. <u>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u> 제4조(책무) ----- ----- -- <u>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u> -- ----- ----- <u>추진하도록</u> ----- -----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3. 이동노동자 쉼터 구성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

제5조(지원사업) -----

----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

-----.

1. (현행과 같음)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교육

3. ----- 구성 및 운영

4. (현행과 같음)

5.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그 구입비 지원

6.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7. 이동노동자 문화·체육·안전 등 활동 지원

8. (현행 제5호와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책·지원 사업 등이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추이 비용이 발생할 시기에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추계하여 추진하겠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장 김 현 수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10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기 체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회장과 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위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치회장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고, 궐위 시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함 (안 제9조제4항)
- 자치회장의 연임 방법, 재호선 제한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신설하여 명확히 함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함 (안 제23조제4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4
----------	------

발의연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기 체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회장과 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위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회장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고, 궐위 시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함 (안 제9조제4항)
- 자치회장의 연임 방법, 재호선 제한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신설하여 명확히 함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함 (안 제23조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있으며,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치회장 연임에 대한 방법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⑥ 자치회장은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연임에 대한 방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23조 임기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7.1.1.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략)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두 차례</u>----- 있다. 다만, <u>결위 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 ⑤ <u>자치회장 연임에 대한 방법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u> ⑥ <u>자치회장은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u>
제2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단, <u>결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 ⑤ ~ ⑦ (생략)	제2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두 차례</u> ----- . <u>이 경우 연임에 대한 방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결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근선

[참고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11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추가 신설 (안 제4조제1항제5호)
- 중복 지원 등 지원 제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5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추가 신설 (안 제4조제1항제5호)
- 중복 지원 등 지원 제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u><신설></u>	제4조(지원사업)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1.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u> 2. <u>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u>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사업장의 물품 및 장비지원에 필요한 재원
 나. 관련조문 :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제5호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1) 대상업종 :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 2) 사업장수 : 21,572개소
- 3) 지원물품 : 경보기(사업장별 1개)
- 4) 지원기간 : 5년간 분할 지원(매년 20%씩 지원)
- 5) 지원방식 : 무상지원

나. 추계 결과

- 1) 총사업장 : 21,572개소
- 2) 소요예산 : 21,572개소×55,000원(부대비용 포함) = 1,186,460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사업예산	237,270천원	237,270천원	237,270천원	237,325천원	237,325천원
사업대상	4,314개소	4,314개소	4,314개소	4,315개소	4,315개소
구입단가	55,000원	55,000원	55,000원	55,000원	55,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편성(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김 정 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237,270	237,270	237,270	237,325	237,325	1,186,460
소상공인경영안정 지원		237,270	237,270	237,270	237,325	237,325	1,186,4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37,270	237,270	237,270	237,325	237,325	1,186,460
	지방세	237,270	237,270	237,270	237,325	237,325	1,186,46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 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12호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험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안 제3조)
- 학습 교재비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안 제4조, 제5조)
- 학습 교재비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안 제6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6
----------	------

발의연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험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안 제3조)
- 학습 교재비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안 제4조, 제5조)
- 학습 교재비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안 제6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28조
- 「교육기본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생”이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습 교재비”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를 제외하고, 학습을 보완하거나 학업 수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 참고서, 문제집, 학습 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라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으로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를 정액 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습 교재비의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 등은 교육적 효과,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바우처, 전자지급수단 등의 방식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① 학습 교재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학습 교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5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고3 재학생 등에게 학습 교재비 지원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조례시행일 : 2027.1.1.
- 비용추계기간 : 2027년 ~ 2031년 (5년)
- 지원대상현황 (단위: 명)

계	2027년 (2009년생)	2028년 (2010년생)	2029년 (2011년생)	2030년 (2012년생)	2031년 (2013년생)
22,714	4,402	4,677	4,688	4,739	4,208

* 2025.12.31.기준 주민등록인구

나. 추계 결과

- 총소요액 : 금681,420,000원(금육억팔천일백사십이만원)
- 산출내역 : 136,284,000원 * 5년 * 1인당 3만원 적용 시

다. 재원조달 방안

- 남동구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지원 대상 인원은 매년 학령인구 및 주민등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작성자 : 안전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혜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132,060	140,310	140,640	142,170	126,240	681,420
수험생 학습교재비 지원		132,060	140,310	140,640	142,170	126,240	681,42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	-	-	-	-
		시비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2,060	140,310	140,640	142,170	126,240	681,420
	지방세		132,060	140,310	140,640	142,170	126,240
	세외수입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13호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민간협력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스마트도시 관련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7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민간협력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스마트도시 관련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의 관리·운영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안전교육국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참고자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1. 3. 16.>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